

대구지방법원 2022. 10. 25 선고 2021가단150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법조, 담당변호사 김동섭, 전정수

피 고 B교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

변 론 종 결 2022. 9. 27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0. 5. 1. 접수 제8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

1)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111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에 기한 채권(원금 164,000,000원)을 가지고 있다. 위 공정증서에는 변제기 2017. 1. 25., 이자율 연 15%, 지연손해금율 연 20%가 각 기재되어 있다.

2) C는 2018. 10. 12. 2,000,000원, 2018. 10. 23. 3,000,000원, 2018. 10. 31. 18,500,000원을 각 원고에게 변제하였고,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164,000,000원과 이에 대한 2017. 9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.

나. C의 증여행위

C는 2020. 5. 1.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4. 22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가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 이에 대하여, 피고는, 원고가 2018. 6. 11.경부터 2018. 6. 18.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금강송 32만 재(304,000,000원 상당)를 반출하여 감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대물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원고가 금강송 32만 재를 반출한 사실, ② 원고가 반출한 금강송이 304,000,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사실 중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는 또한,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피고가 교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피고의 목사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대출을 받은 후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하였을 뿐이므로,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.

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선의 항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2020. 4. 22.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인

별 지

1. 경북 철곡군 대 63 평방미터
2. 경북 철곡군 대 215 평방미터
3. 경북 철곡군

[도로명주소] 경북 철곡군

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

1층

일반음식점(철근콘크리트조) 117.21 평방미터

2층 일반음식점 (철근콘크리트조) 120.15 평방미터

3층 단독주택(시멘트벽돌조) 120.15 평방미터

(이상 소유자 교회)(대구지방법원 철곡동기소)



